

연구보고 2014-05

통합 재무회계규칙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연구

김은설 박진아 이동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2012년 이래 유아기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공·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까지 시행되면서 유아교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일인당 월 22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러한 유아 학비는 부모 바우처 방식으로 유치원에 직접 입금 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국가 교육재정의 큰 부분이 사립유치원에 직접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규칙 도입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기관설립자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해서 유치원 수입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는 공공 교육사업의 주체이며 학교 체계 속에 있는 유치원을 사익 추구 영리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므로 보고서가 나오는 현재까지도 두 측의 의견 대립은 여전하다. 사실 최근 교육부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 쟁점에 대해 본 연구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성격 규명은 법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가능한 재무회계규칙 자체의 개발만을 연구 과제로 한계 짓고 시작하였다. 이는 공공성 제고라는 우선 필요사항에 비추어 규칙 도입 방식에만 집중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쟁점 사항은 향후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모쪼록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기본 성격에 대한 논의와 좋은 결론이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4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	9
3. 연구 방법 .....	10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11
II. 유치원 현황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	12
1. 유치원 현황 .....	12
2. 재정 지원 현황 .....	20
III.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발 .....	22
1. 규칙(안) 개발 과정 .....	22
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4
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의 특징 .....	35
IV. 적립금 및 차입금 적정 기준 비율 산출 .....	38
V. 결론 및 논의 .....	44
참고문헌 .....	46
부록 .....	47
부록 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	49
부록 2. 공청회 토론문 .....	82
부록 3.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기준 요약 .....	107
부록 4. 어린이집 세입·세출 구조 .....	112

## 표 차례

〈표 II-1-1〉 유치원 교육 개황 .....	12
〈표 II-1-2〉 영유아 인구(유치원 취원 대상아수) .....	13
〈표 II-1-3〉 설립주체별 유치원 수 .....	14
〈표 II-1-4〉 설립별 지역별 유치원수 .....	15
〈표 II-1-5〉 도시급별 유치원수 .....	16
〈표 II-1-6〉 연령별 원아수 .....	17
〈표 II-1-7〉 역별 유치원 원아수 .....	18
〈표 II-1-8〉 도시급별 설립별 원아수 .....	19
〈표 II-2-1〉 2013 유치원 지원 결산 및 2014 예산 .....	21
〈표 III-2-1〉 유치원 재무·회계 별지 서식 유형 .....	35
〈표 IV-1-1〉 사립유치원 표본 분포 및 개·보수비 계상 유치원 수 .....	40
〈표 IV-1-2〉 사립유치원 연간 개·보수 비용 .....	41
〈표 IV-1-3〉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수업료 수입(학부모 부담+국가지원금) ...	42
〈표 V-1-1〉 연도별 사립유치원 원아 수 .....	45

## 그림 차례

[그림 II-1-1] 설립별 유치원수 추이 .....	16
[그림 II-1-2] 설립별 원아수 추이 .....	20
[그림 II-1-3] 지역별 원아수 추이 .....	20
[그림 III-1-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발 과정 .....	23
[그림 III-2-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의 구성 .....	24



# 요 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누리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높아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공공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일환으로, 재무·회계 규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격적인 통합 추진에 앞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적절하고 가장 현실적인 고유의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함. 유치원 현실을 반영한 재무·회계 규칙이 갖추어져 있을 때 어린이집과의 통합 과정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두 기관의 특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유·보 통합을 위한 유치원측 재무·회계 제도의 확보, 정보공시의 신뢰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 사립유치원의 수적 현황과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현황 개관
-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을 개발하여 제시함.
- 재무회계 규칙 조항 중 적립금과 차입금의 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3. 연구 방법

- 문헌 및 기존 연구 고찰
-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개최
- 사립유치원 관련 연합회 대상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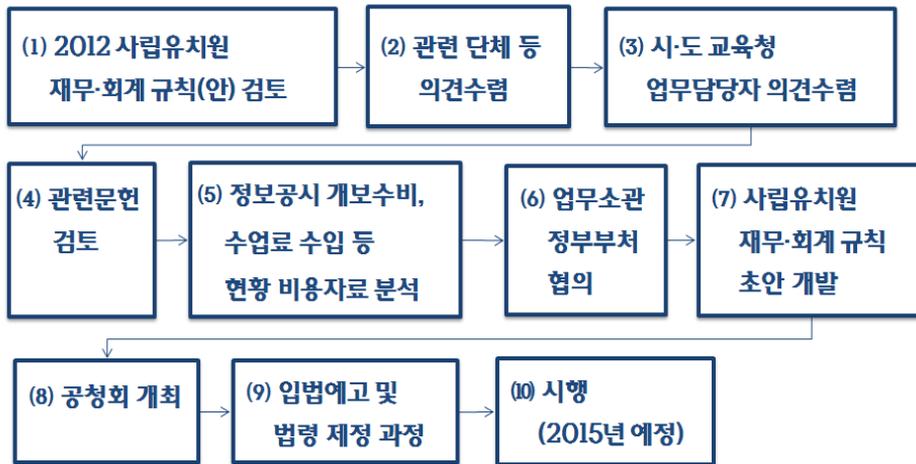
- 사립유치원 관련자 대상 공청회 개최
- 사립유치원 공시 자료를 활용한 적립금/차입금 수준 산출

#### 4. 유치원 현황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전국 유치원수는 8,678개원, 원아수는 658,188명임.
  - 유치원수는 공립 4,574개원, 사립 4,101개원으로 사립이 공립에 비해 89.7%에 이룸. 원아수는 공립 141,827명, 사립 516,136명으로 사립 원아 수는 공립의 3.6배수임.
  - 교원수는 46,126명이며, 공립 10,974명, 사립 35,129명으로 사립은 공립의 3.2배수임.
  - 교원 1인당 아동수는 공립 12.9명, 사립 14.7명으로 유사한 수준임.
- 2013년부터 누리과정 3-5세 유아 전체에 대해 지원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유입되는 국가의 재정은 2012년에 비해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음.
  - 2014년의 경우 전체 유치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3,612,209백만원이며 이 중 53.8%인 1,943,065백만원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임.
  - 비정규직 인건비, 유아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인 교수-학습활동지원, 급식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립유치원에 국가 재정지원이 들어감.
  -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발 과정 및 주요 내용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은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음.



- 총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통칙,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관할청,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제2장 재산관리: 재산의 관리자, 자금의 관리, 채무보증 금지, 차입금, 계약, 물품의 범위, 물품의 관리, 불용품의 처리, 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조
- 제3장 예산과 결산: 세입 세출의 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편성 요령 등,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편성절차,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성립 전 예산의 집행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결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제4장 회계: 회계연도, 회계의 방법,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금 징수, 수입금의 수납,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과오납의 반환, 지출의 원칙, 지출의 방법, 증빙서류, 선금급, 개산급
- 제5장 감사: 감사, 관할청 감사,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 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의 특징

### 단식부기 사용

- 초중등 학교 회계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식보다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나 복식부기 활용에 제한두지 않음.

### 일시/장기 차입금의 인정

- 예산 개시 초기 교사인건비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유치원 경영자의 개인자산을 포함한 제1금융권,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일시차입 인정함.
- 1 회계연도 교육비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안(교육시설 개·보수, 차량구입 등)에 대해 장기차입이 가능하며, 차입상환액은 수업료(누리과정학비지원금과 학부모납부수업료의 총합)의 7% 이내로 한정함.

### 적립금의 인정

- 건물자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적립을 허용함. (적립금액은 전연도 결산 수업료 7% 이내. 차입금과 적립금 동시운용 불가)

### 결산서 제출 시기 지연

- 사립유치원 특성상 유치원 장이 주로 회계 전체를 담당해야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종료 2월부터 40일 이내였으나, 2개월 이내로 조정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할 교육감 자율 결정권 부여

- 수의계약 방법, 관할청의 감사, 예산편성요령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유치원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의 통일을 위한 편성방법(과목해소) 제시

-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예결산 자료의 해석과 비교의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예결산서 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함.

## 7. 적립금 및 차입금 적정 기준 비율 산출

- 본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적립금과 차입금을 일정 수준으로 허용하고 있음. 차입금은 일시차입과 장기차입이 가능함.

- 일시차입금은 교육청에서 1분기 유아학비 지원금을 늦게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3월 교사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환 재원이 있을 때 단시일 간 차입을 가능하도록 하여 유치원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장기차입금의 경우 정해진 세 가지 목적 즉, 유치원의 개·보수, 교재교구의 구입, 통학차량의 구입을 위한 이유로 차입이 가능함. 이 때 장기 차입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상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전 계획이 필요함. 계획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
- 적립금과 차입금 상환액 비율은 모두 전년도 결산의 수업료 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 안에서 제시하는 7%라는 기준은, 유치원 정보공시에 공개된 유치원 2012년 세출결산서를 취합하여 연간 시설 대규모 개·보수비로 사용된 재산조성비 관의 '시설비' 항목에 보고된 비용과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한 데 지출한 것으로 보고된 비용을 구하고, 이 비용 합의를 대표치를 2012년 사립유치원의 개·보수비용으로 정함. 이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수업료 대비 연간 적립금 비율 산출 식:**

$$\begin{aligned}
 & \text{(연간 개·보수비} \times 4\text{회} \div 5\text{년}) \div \text{(연간 수업료 수입 총액)} \\
 & = (33,856,000 \times 4 \div 5) \div (331,206 \times 12 \times 97) \\
 & = 27,092,000 \div 385,523,784 \\
 & = 0.07 = 7\%
 \end{aligned}$$

## 8. 논의 및 결론

-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므로 어린이에 대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 공적 기관이기도 하지만, 설립한 투자자가 사회공익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계유지의 목적도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적 재산의 인정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사립유치원 단체 내에 있음.

- 어느 쪽이 완전히 옳다고 하기 애매하며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자본투자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영리 추구 학원과는 다르며,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는 점임. 학교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뜻함. 공적 운영이라 하면 개방성과 투명한 재정 공개를 당연한 의무로 추구하는 운영 방식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공 재무회계를 따르고 투자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기관임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개념임.
- 2014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시설 유형을 유지하는 형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지원금이 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을 주지만 공적 개방 요구 부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전혀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며 자율적 체계에 따른 자체 감독만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으로 별도 유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기관을 보는 시각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유지해야 하는 공공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음.
  -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등 법인이 설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인, 즉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있을 수 있음.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자체의 재무회계규칙이나 감사가 정규화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립유치원에 버금가는 공공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여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이해하면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율권이 거의 완벽하게 인정되어 왔음. 비록 학교 체계 속에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예·결산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장학 등 관리 방침을 따르고 있지만 유치원 학비는 유치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어, 유아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이 되나 재정의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부분임.
- 그러나 누리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높아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공공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 2012년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가수준 유아 교육·보육 공통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는 3-5세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전체 유치원 취원 유아에 대해 기본과정 교육비 전액이 지원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공적 재정의 비중이 높아짐.

-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학비 바우처의 성격을 띠고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형식으로 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적 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투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가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임.
- 2012년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보편적 실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보공시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전반적인 운영과 학비 현황 등 기관 재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적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감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됨.
  - 학부모나 일반인은 정보공시에 나타나 있는 사립유치원의 예·결산 현황에 따라 학비 수준을 인식하고 상호 비교하는 근거를 확보했으며, 자기보고된 자료이긴 하지만 언론은 사립유치원 학비에 대한 문제점을 증거 기반하여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공시에 수록된 사립유치원 재정 현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많이 있고(2014년 8월 사립유치원 간담회), 예·결산 보고 형식이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에 따른 재정 현황 보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도입으로 가능한 일이 될 것임.
-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일환으로, 재무·회계 규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격적인 통합 추진에 앞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적절하고 가장 현실적인 고유의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함. 유치원 현실을 반영한 재무·회계 규칙이 갖추어져 있을 때 어린이집과의 통합 과정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두 기관의 특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임.
- 2016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목표로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그 첫 단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위한 결제카드의 통합, 정보공시 내용 및 방식의 통합 정책을 공개한 바 있음(2014. 8. 29. 연합뉴스).

- 재무·회계 규칙 통합은 유보통합추진단이 기 제시한(2014) 통합 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통합 과제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
  - 재무·회계의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의 운영 방식과 재정적 관리·감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통합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막바지 고비가 될 것임.
  - 이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그 적절성을 파악하여 시행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유·보 통합을 위한 유치원측 재무·회계 제도의 확보, 정보공시의 신뢰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 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 사립유치원의 수적 현황과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현황 개관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장에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며 국가의 교육 예산의 어느 정도가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함.
-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을 개발하여 제시함.
-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유·보 통합 추진을 고려할 때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고 정보공시에 정확한 예·결산을 게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학비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재무회계 규칙 조항 중 적립금과 차입금의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개발하고,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

원에 적절한 적립금·차입금의 수준을 경험적(empirical)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

### 3. 연구 방법

#### □ 문헌 및 기존 연구 고찰

- 사립학교법, 사학재단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 규칙 등과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현황 통계 등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내용을 추진함.
- 기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재무회계규칙을 개발함.

#### □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개최

-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및 사립학교 재정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방식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함.
- 자문회의에 앞서 개발된 재무회계 안을 이메일로 보내고 그에 대한 의견서 양식을 함께 송부하여, 회의에서 준비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함.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6개 시·도 교육청은 서면 의견을 제출함.

#### □ 사립유치원 관련 연합회 대상 간담회 개최

-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무회계규칙제정에 대한 사립유치원 측의 의견을 수렴함.

#### □ 사립유치원 관련자 대상 공청회 개최

- 전국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발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함.

#### □ 사립유치원 공시 자료를 활용한 적립금/차입금 수준 산출

-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중 2012년 예·결산서를 활용하여 연간 필요 개·

보수 및 차량 도입 비용을 산출하여 재무회계규칙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적립금과 차입금의 수준을 계산함.

- 전체 8,678개 유치원 중 47%가량을 차지하는 4100여개 사립유치원 중 494개를 무선표집하였으나 그 중 개·보수비를 계상하고 있는 유치원 409개의 예·결산서를 확보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중 약 10%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함.

####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재무회계 규칙은 완전히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 기존의 제안을 보완·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한 것임.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우명숙 외, 2012)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실정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2014년 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
  - 따라서 각 조항의 구성 이유와 내용의 원천 등은 세세히 밝히지 않음. 즉, 이전의 원 보고서(우명숙 외, 2012)에 제시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같은 이유로 많은 조항에서 기존에 제안된 재무회계규칙(우명숙 외, 2012)과 내용상 동일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음.
- 연구의 범위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조항과 관련 서식 구성에 한정함. 그 외 법적, 제도적 변경이 필요한 논의는 제외함.
  -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가 강력히 요청한 바 있는 ‘유치원 설립자의 재산으로서 유치원 시설물의 인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므로, 이 과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음. 설립자에 대한 급여의 인정 또한 재무회계 규칙이 아닌, 사립 유치원 설립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 문제이므로 이는 차후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논의될 사항임.

## II. 유치원 현황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 본 장에 제시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의 현황통계자료 및 국가 유아교육 예산으로, 지역별, 연령별 원아수와 유치원수를 중심으로 한 자료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유치원 현황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됨.

### 1. 유치원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전국 유치원수는 8,678개원, 원아수는 658,188명임.
  - 유치원수는 공립 4,574개원, 사립 4,101개원으로 사립이 공립에 비해 89.7%에 이룸. 원아수는 공립 141,827명, 사립 516,136명으로 사립 원아 수는 공립의 3.63배수임.
- 교원수는 46,126명이며, 공립 10,974명, 사립 35,129명으로 사립은 공립의 3.20배수임.
  - 교원 1인당 아동수는 공립 12.92명, 사립 14.69명으로 유사한 수준임.

〈표 II-1-1〉 유치원 교육 개황

단위: 개원, 학급, 명, 교실

구분	계	국·공립	사립
기관수	8,678	4,577	4,101
학급수	30,597	8,220	22,377
원아수	658,188	142,052	516,136
교원수	46,126	10,997	35,12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2013년 기준 영유아 인구 중 유치원 취원가능연령은 1,410,211명임. 이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23.7%를 차지하고 이 중 76.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

고 있음. 유아교육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역할이 지대함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음.

〈표 II-1-2〉 영유아 인구(유치원 취원 대상아수)

단위: 명

구분	취원 대상아 수
총인구수 51,141,463	
계 ('07~'13년생)	3,264,476
계 ('07~'9년생)	1,410,211
'13년생 (0세)	421,465
'12년생 (1세)	486,655
'11년생 (2세)	474,098
'10년생 (3세)	472,047
'09년생 (4세)	447,055
'08년생 (5세)	467,935
'07년생 (6세)	495,221

자료: 안전행정부(2013).주민등록인구통계.

### 가. 유치원수

-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2013)에 의하면, 유치원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8,678개원임.
  - 국·공립이 4,577개원, 사립 4,101개원으로 비슷함.
  - 국립기관은 3개, 공립단설이 184개, 공립병설 나머지 4,390개원의 비중임
  - 공립단설의 비중은 4%임. 사립유치원은 법인, 종교단체, 개인, 군부대 기타로 나뉨.
- 사립유치원은 개인(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3,325개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함.
  - 다음으로 법인이 470개원, 종교단체가 233개원, 군부대 17개원, 기타 56개원 순서임
  - 사립유치원대비 개인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비중이 81%이고, 법인이 11%임.

- 전체 유치원대비로는 개인설립자 38%, 법인이 5%임.
- 법인의 경우, 재단법인 352개원, 학교법인 88개원, 사단법인 25개원, 사회복지법인 5개원의 순서로 유치원 수 비중이 높음.

〈표 II-1-3〉 설립주체별 유치원 수

단위: 개원

		구분	계
전체			8,678
국립유치원			3
공립유치원	계		4,574
	단설		184
	병설		4,390
사립유치원		계	4,101
사립유치원	법인	계	470
		학교법인	88
		사단법인	25
		재단법인	352
		사회복지법인	5
종교단체			233
개인			3,325
군부대			17
기타			5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 지역별로 유치원수를 보면, 경기 2,087개원(24%), 서울 869개원(10%), 경북 703개원(8%) 순으로 많음.
  - 총 3개의 국립유치원은 강원, 충북, 충남에 각 1개원씩 운영되고 있음.
- 전체 공·사립유치원수의 1대1수준의 비중은 시·도별로 보면 다른 양상을 보임.
  - 경기지역만 공·사립 1,073개원, 1,014개원으로 전국 비중과 유사함.
  - 시 단위지역은 세종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서울 지역이 높음.
  - 반면, 도 단위지역의 경우 세종을 포함하여 공립유치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표 II-1-4〉 설립별 지역별 유치원수

단위: 개원

구분	계	국립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계	단설	병설	계	법인	종교단체	개인	기타
전체	8,678	3	4,574	184	4,390	4,101	470	233	3,325	73
서울	869	-	169	13	156	700	98	57	523	22
부산	383	-	70	8	62	313	41	21	248	3
대구	361	-	128	2	126	233	25	15	186	7
인천	411	-	152	7	145	259	15	7	236	1
광주	295	-	120	6	114	175	15	7	150	3
대전	260	-	90	5	85	170	16	5	147	2
울산	193	-	77	5	72	116	5	5	104	2
세종	25	-	22	3	19	3	-	1	2	-
경기	2,087	-	1,073	32	1,041	1,014	71	34	896	13
강원	379	1	276	14	262	102	19	13	67	3
충북	341	1	253	15	238	87	18	5	64	-
충남	507	1	368	16	352	138	27	9	97	5
전북	523	-	361	14	347	162	20	9	131	2
전남	546	-	435	15	420	111	19	3	88	1
경북	703	-	467	10	457	236	54	13	166	3
경남	683	-	423	19	404	260	14	29	213	4
제주	112	-	90	-	90	22	13	-	7	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 도시급별로는 전체 중소도시에 3,075개원으로 가장 유치원이 많으며, 다음 읍·면 지역, 대도시 순임.
  - 국·공립 유치원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유치원수가 많음.
  - 사립은 반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많음.
- 기관규모별로는 살펴보면, 유치원당 원아수가 많아질수록, 유치원수는 적음
  - 국·공립기관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나, 사립은 30인미만 기관을 제외하고 500개원을 웃도는 수준임.
- 1980년부터 전국 유치원수는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 유치원 수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2005년 이후로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0개원 이하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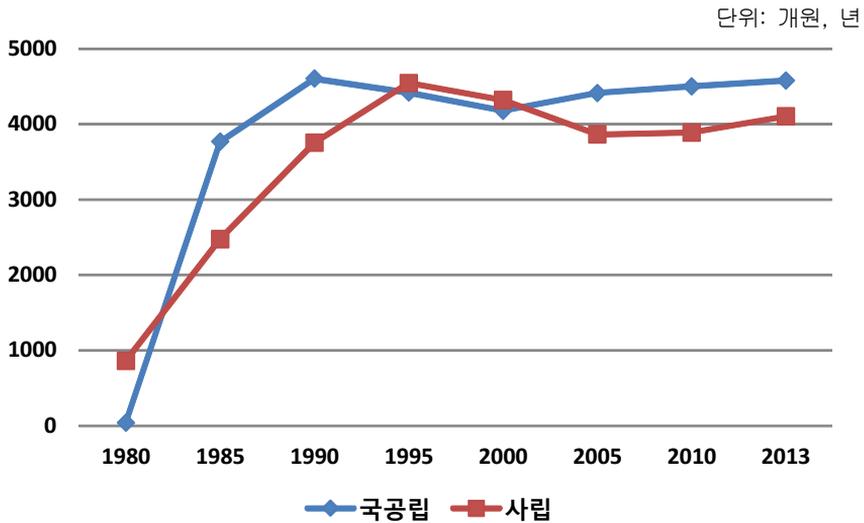
○ 경기지역의 경우 1980년대이후 줄곧 증가추세이며 2013년 2000개원을 넘어섬.

〈표 II-1-5〉 도시급별 유치원수

단위: 개원

	계	국·공립	사립
전체	8,678	4,577	4,101
도시급			
대도시	2,614	716	1,898
중소도시	3,075	1,425	1,650
읍·면지역	2,989	2,436	553
기관규모(원아수)			
~29	2,123	1,981	142
30~59	1,494	979	515
60~89	1,091	397	694
90~119	843	102	741
120~149	756	99	657
150~199	711	27	684
200~	591	3	58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II-1-1] 설립별 유치원수 추이

## 다. 원아수

- 유치원 취원 연령인 만 3-5세인 유치원 원아수는 3세 143,069명, 4세 233,926명, 5세 277,826명임.
  - 원아 연령이 높을수록 원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만 3-5세를 초과하는 연령의 원아수는 658명으로 장애 원아일 가능성이 높음.
  - 한편, 3세미만의 원아수가 2,709명이며, 사립 2,292명으로 보아 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모집이 이루어지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지역별 원아수를 보면, 독보적으로 경기지역이 182,231명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서울 92,400명, 경남 50,370명, 부산 44,217명, 인천 41,594명 순으로 많음.
  - 공·사립 모두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원아수가 많음.

〈표 II-1-6〉 연령별 원아수

구분	계	단위: 명	
		국·공립	사립
전체	658,188	142,052	516,136
3세 미만	2,709	417	2,292
3세	143,069	18,502	124,567
4세	233,926	44,483	189,443
5세	277,826	78,373	199,453
6세	650	271	379
7세 이상	8	6	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 지역별 공사립의 비중을 보면 전체 원아 수에서 공립 21.5%, 사립 78.42%으로 사립 취원아 수가 많으며, 공·사립간 원아 수 격차가 상당함.
  - 부산지역 전체 원아 수에서 공립 8.75%, 사립 91.25%로 격차가 큼.

- 공·사립간 원아수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충북, 전남지역으로, 대략 공립 47%, 사립 52.2%으로 두지역이 유사함. 예외적으로 세종에서 공립 78.1%, 사립 21.9%임.
- 국립 유치원은 충북, 충남, 강원지역에 존재하며, 각각 65명, 79명, 81명의 원아수를 기록함. 한편 도시급별로 살펴본 결과, 중소도시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282,809명, 269,364명임.

〈표 II-1-7〉 지역별 유치원 원아수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원아수	비중	원아수	비중	원아수	비중
전체	142,052	21.58	516,136	78.42	658,188	100.00
서울	12,027	13.02	80,373	86.98	92,400	100.00
부산	3,871	8.75	40,346	91.25	44,217	100.00
대구	4,167	12.06	30,383	87.94	34,550	100.00
인천	8,118	19.52	33,476	80.48	41,594	100.00
광주	3,964	17.48	18,712	82.52	22,676	100.00
대전	3,913	15.49	21,350	84.51	25,263	100.00
울산	2,994	15.73	16,038	84.27	19,032	100.00
세종	1,019	78.08	286	21.92	1,305	100.00
경기	38,607	21.19	143,624	78.81	182,231	100.00
강원	6,240	38.99	9,767	61.02	16,007	100.00
충북	8,346	47.84	9,100	52.16	17,446	100.00
충남	8,977	33.99	17,434	66.01	26,411	100.00
전북	7,063	30.36	16,203	69.64	23,266	100.00
전남	9,040	47.84	9,855	52.16	18,895	100.00
경북	10,032	26.95	27,198	73.05	37,230	100.00
경남	11,487	22.81	38,883	77.19	50,370	100.00
제주	2,187	41.30	3,108	58.70	5,295	10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 이를 다시 공사립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의 도시급별 원아분포는 전체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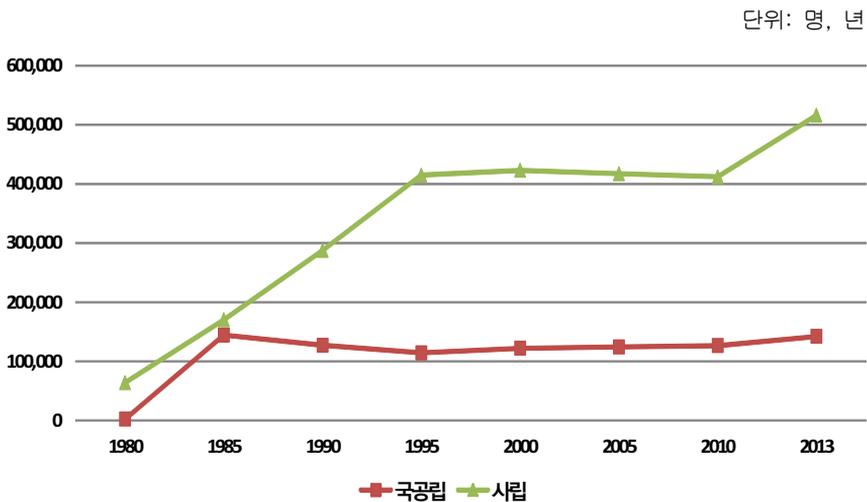
포와 유사하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원아분포가 높으나, 공립의 경우는 아님.

〈표 II-1-8〉 도시급별 설립별 원아수

구분	단위: 명		
	국·공립	사립	계
계	142,052	516,136	658,188
대도시	36,691	232,673	269,364
중소도시	59,813	222,996	282,809
읍면지역	45,548	60,467	106,0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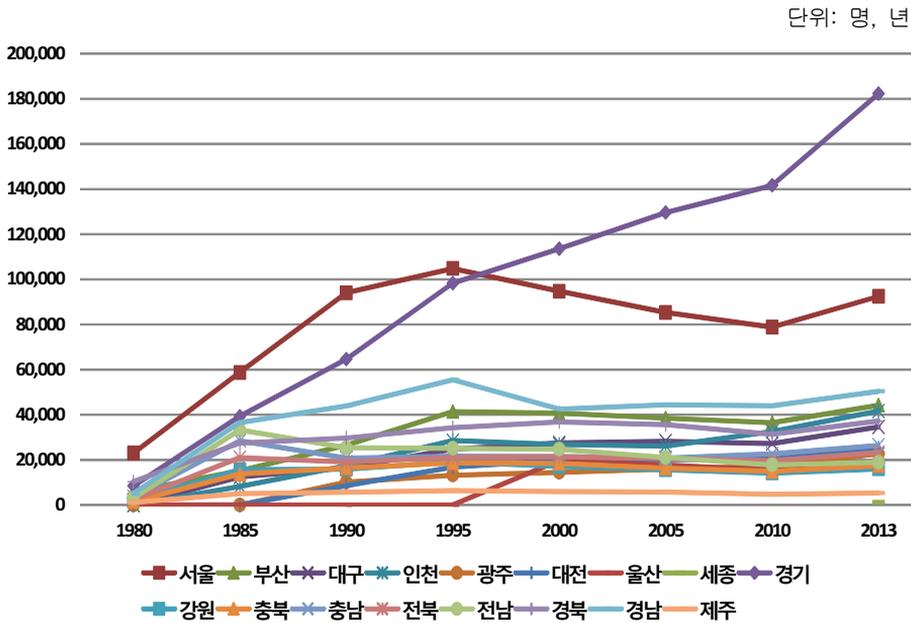
- 설립별 원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공립 원아수가 상당폭 증가함.
  - 1987년까지는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 원아를 확대해갔으나, 그 이후로는 100,000명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함. 사립 원아의 추이는 1980년 이전부터 증가해왔고 1997년까지 빠르게 증가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II-1-2] 설립별 원아수 추이

- 시도별 원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 추세임. 서울지역은 여타지역과 다르게 1980년 이전부터 원아수가 증가함.
  - 1995년에는 서울·경기 지역간에 원아수가 역전함. 1997년 이후로 서울지역은 100,000명을 밀돌면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경기지역은 약간 주춤하였으나 쉽없이 꾸준히 증가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II-1-3] 지역별 원아수 추이

## 2. 재정 지원 현황

- 2013년부터 누리과정 3-5세 유아 전체에 대해 지원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유입되는 국가의 재정은 2012년에 비해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음.
  - 다음의 <표 II-2-1>을 보면, 2014년의 경우 전체 유치원에 투입되는 예산

이 3,612,209백만원이며 이 중 53.8%인 1,943,065백만원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임.

-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정규직 인건비, 유아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인 교수-학습활동지원, 급식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립유치원에 국가 재정지원이 들어감. 아동 수가 많음으로 인해 대부분 공립유치원보다 더 큰 비용이 사립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표 II-2-1〉 유치원 지원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정규직인건비	543,529		543,529	635,101		635,101
	비정규직인건비	123,709	1,290	124,999	147,496	1,344	148,840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116,083	288,092	412,571	114,144	284,313	398,457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지원	119,556	1,325,034	1,444,590	147,353	1,531,183	1,678,536
	급식 지원	34,639	41,465	76,104	38,960	43,161	82,121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 지원	183,897	2,776	186,673	186,921	2,263	189,184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생수용시설	173,756		173,757	357,119		357,119
	교육환경개선시설	40,854	69,0801	141,118	42,050	80,801	122,851
계		1,336,022	1,727,737	3,103,341	1,669,144	1,943,065	3,612,209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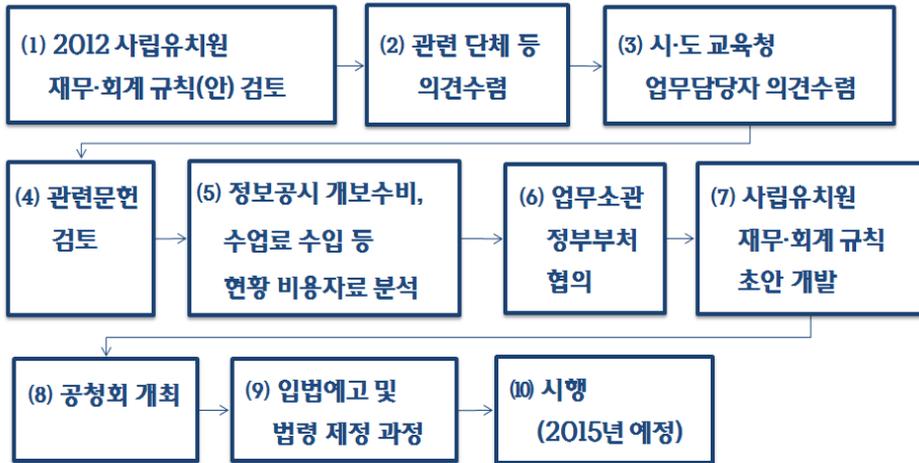
- 누리과정 학비 지원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있으며 전체 합계를 비교해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21,328천원이 늘어 1년 사이에 12.5%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Ⅲ.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발

#### 1. 규칙(안) 개발 과정

- 201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검토
  - 2012년 공청회(2012. 6. 25.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제시된 바 있는 교육부의 재무회계 규칙(안)에 대한 검토
  - 이는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 등을 기준으로 개발됨.
-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대표자 회의 개최(2014. 8. 8)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자 회의 개최(2014. 9. 3)
- 전국 시·도 교육청 유치원 재무·회계 관리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2014. 9. 3)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참석 회의 개최
  - 재무·회계 규칙(안)에 대한 수정 의견 수렴
- 관련 문헌 검토
  - 우명숙 외(201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방안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김병주 외(2010).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공립학교 예산편성기본지침(울산) 등
-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한 개·보수 등 비용 지출 현황 분석
  - 적립금 및 차입금 적정 수준 산정을 위한 사립유치원 현황 자료 표집(492개 기관)
  - 2012년 결산 기준 수익자부담을 제외한 수업료 비용, 개·보수 비용, 차량 구입비용 등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 지역별, 유치원 규모별, 설립연도별 유치원 시설 유지비 산출
- 업무 소관 정부 부처와 협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관련업무 담당자 협의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초안 개발
- 공청회 개최
  - 2014. 10. 7. 한국언론정보재단 국제회의실
  -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대표자 간 협의
- 입법예고 및 정부 법령 제정 과정
- 시행
  - 2015년 3월 예정



[그림 III-1-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발 과정

## 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sup>1)</sup>

□ 총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제6조</li> <li>• 목적, 정의, 통칙,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관할청,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li> </ul>
제2장 재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제16조</li> <li>• 재산의 관리자, 자금의 관리, 채무보증 금지, 차입금, 계약, 물품의 범위, 물품의 관리, 불용품의 처리, 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li> </ul>
제3장 예산과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조~제30조</li> <li>• 세입 세출의 정의, 예산중계주의 원칙, 예산편성 요령 등,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편성절차,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결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li> </ul>
제4장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조~제43조</li> <li>• 회계연도, 회계의 방법,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금 징수, 수입금의 수납, 과년도수입과 반납금, 과오납의 반환, 지출의 원칙, 지출의 방법, 증빙서류, 선금급, 개산급</li> </ul>
제5장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4조~제46조</li> <li>• 감사, 관할청 감사, 회계관계직원의 책임</li> </ul>

[그림 III-2-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안의 구성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통칙,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관할청,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제2조 정의: “유치원경영자”는 유치원의 장(원장)과 별도의 개념으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私人)으로 함.

— < 재무회계 규칙(안)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3조 및 제5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무회계규칙(안)은 교육부와의 협의에 의해, 기존에 제안된 재무회계규칙(우명숙 외, 201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내용상 동일한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유치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통칙)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할청)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증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재산관리: 재산의 관리자, 자금의 관리, 채무보증 금지, 차입금, 계약, 물품의 범위, 물품의 관리, 불용품의 처리, 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조
  - 제7조 재산의 관리자: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유치원 경영자, 재산의 운영 책임자는 유치원의 장이 됨.
  - 제10조 차입금: 유치원경영자가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는 단기차입과, 5년 이내 상환계획에 의한 관할청 허가 하 장기차입이 가능함. 차입의 규모와 이율, 차입가능 대상 기관은 규칙에 제시된 데 의함.(이하에서 자세히 논함)
  - 제11조 계약: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장이며, 100만원 미만 물품, 농축산물 및 제도가공식품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음.

〈재무회계 규칙(안) 제2장 재산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자) 유치원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유치원경영자”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된다. 다만, 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유치원의 장이 된다.

제8조(자금의 관리) ① 유치원의 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유치원 명의로 거

래계좌를 개설하고 유치원회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채무보증 금지) 유치원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10조(차입금) ① 유치원경영자는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경영자는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의 구입, 통학차량의 구입을 위해 1년 이상 5년 이내의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경영자(법인 이 설립한 경우 이사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기타 관할 교육청 요청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장기차입금의 매년 상환액은 유치원회계의 전년도 세입결산 수입료 총액의 7%를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차입금 상환기간 중에는 제21조제1항에 의한 적립금 중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다른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다. 단, 수입료는 [별표 1]에 제시된 예·결산과목 중 수입료 항의 금액(수입료 목과 누리과정지원금 목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차입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제1항의 차입처에는 유치원경영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차입 이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금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입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1조(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며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조항의 수의계약 대상, 범위,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

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⑤ 계약서의 작성, 보증금에 관한 사항, 검사조서의 작성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품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13조(물품의 관리) ① 유치원의 물품관리자는 유치원의 장으로 하며,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유치원의 장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명하며,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④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불용품의 처리) ① 유치원의 물품 중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유치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5조(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유치원 현황표[별지 제1호 서식]
2. 재산관련 장부와 서류
  - 가. 재산대장과 도면[별지 제2호 서식]
  - 나.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다. 기타 주요한 재산관련 서류
3. 징수부[별지 제4호 서식]
4. 징수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
5. 수입일계표[별지 제6호 서식]

6. 지출부[별지 제7호 서식]
7.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
8.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9. 금융기관과의 거래 입증자료(거래통장원본, 금융기관이 발행한 거래내역 등)
10. 제20조, 제21조, 제28조, 제29조의 장부 및 서류
11.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유치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제1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유치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유치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 매체는 관련 장부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예산과 결산: 세입 세출의 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편성 요령 등,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편성절차,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결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제19조 예산편성요령 등: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교육감이 예산편성요령 등을 정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제21조 예산편성절차: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치원경영자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유치원 장에게 송부함.
  - 제28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구입, 통학차량구입에 전년도 세입결산 수업료 총액의 7% 이하로 책정 가능
  - 제29조 결산: 유치원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확정함.

〈재무회계 규칙(안)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7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편성 요령 등)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유치원 ‘예산편성요령’ 등을 정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유치원경영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유치원의 예산 편성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③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유치원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별지 제10호 서식]
2. 세입·세출예산서[별지 제11호 서식]
3. 장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4. 유치원 현황표[별지 제1호 서식]
5. 교직원 인건비 일람표[별지 제13호 서식]
6. 법인의 경우 이사회 관계 회의록 사본

제21조(예산편성절차) ① 유치원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세입세출 예산안(이하 예산안)을 편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교직원은 유치원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유치원경영자는 예산안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유치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는 유치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예산) ① 유치원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유치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②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을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① 유치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 수익자부담경비, 목적성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비) ① 유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제25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호 변경은 할 수 없다

제2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퇴직적립금, 교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건축적립금, 교재교구구입을 위한 교재교구적립금, 통학차량구입을 위한 차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승인받아야 한다.

1. 적립금 적립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
2. 적립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3. 기타 관할 교육청 요청 서류

② 적립금 적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단, 퇴직적립금 제외), 매년 적립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의 수업료 총액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업료는 세입결산서 항목 중 수업료와 누리과정지원금의 합을 의미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해당 유치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적립기간 및 폐원 시 적립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① 유치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를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경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결산총괄표[별지 제16호 서식]
2. 세입·세출결산서[별지 제17호 서식]
3. 아·전용 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4. 예금 잔액 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
5. 예비비 사용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7. 교직원 인건비 일람표[별지 제13호 서식]

제30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 유치원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회계: 회계연도, 회계의 방법,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금 징수, 수입금의 수납,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과오납의 반환, 지출의 원칙, 지출의 방법, 증빙서류, 선급금, 개산금
-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말일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출납을 폐쇄함.

- 제32조 회계의 방법: 단식부기에 의함. 필요에 따라 복식부기 가능
- 제33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유치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유치원의 장으로 함.
- 제40조 지출의 방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신용카드 및 전산망 자금 이체 방법을 사용하며, 10만원 미만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 가능함.

— <재무회계 규칙(안) 제4장 지출의 방법> —

제31조(회계연도) ① 유치원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유치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32조(회계의 방법)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규모와 실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유치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유치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제33조의 수입기관·지출명령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유치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조항 대상 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5조(수입금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유치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36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7조(과년도수입과 반납금)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9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 행위"라 한다)는 유치원의 장이 행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하여야 하며, 「민법」에 따라 유치원의 채무와 유치원 외의 자의 유치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유치원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40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43조에 따른 개산금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호계약 조건이 있을 시 그를 따를 수 있다.

제41조(증빙서류) 유치원의 장 및 지출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4.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서 및 내역서

제42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3조(개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2. 수련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장 감사: 감사, 관할청 감사,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제45조 관할청 감사: 관할청은 유치원에 대한 3년 주기 재무·회계 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특성을 감안하고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재무회계 규칙(안) 제5장 감사〉

제44조(감사) ① 유치원경영자(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는 유치원의 장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유치원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사인이 운영하는 경우 경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유치원경영자(이사장)가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경영자(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관할청 감사) ① 관할청은 유치원에 대하여 재무·회계 관련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유치원 재무·회계 관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유치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별표 1 예(결)산 과목: 관·항·목별 편성방법(과목해소)을 제시함.

□ 별지에 첨부된 서식은 다음 <표 III-2-1>과 같음.

〈표 III-2-1〉 유치원 재무·회계 별지 서식 유형

구분	서식	
유치원일반 장부 및 서류	-유치원현황표 -재산대장 -물품관리대장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지출부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예산관련 서류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서	-장기차입금명세서 -교직원 인건비 일람표
적립금관련 서류	-적립금적립계획서	-적립금사용계획서
결산관련 서류	-결산총괄표 -세입·세출결산서 -이·전용명세서 -예금잔액명세서	-예비비사용명세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명세서

### 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의 특징

□ 단식부기 사용

- 사립유치원의 경우 초중등 학교 회계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리를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활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무 회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쉽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함(우명숙, 2014). 이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은 복식보다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함. 그러나 법인유치원은 법인 이사회가 요구하는 별도의 회계양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복식부기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일시/장기 차입금의 인정

- 누리과정 지원금에 교육과정 학비를 의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상황에서 예산 개시 초기(3월) 교사 인건비 지급 등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시차입금 도입을 허용함. 차입금은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하나 일시 차입금의 경우 유치원 경영자 개인자산으로부터의 차입 또한 인정함. 차입에 대한 이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 이율 수준에 따름.

- 교육시설 수선 유지를 위한 개·보수 비용(감가상각의 인정과 연결되는 의미), 차량 구입 등 1 회계 연도에 포함하여 교육비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후 최대 5년 상환의 장기 차입금 도입을 허용함. 연간 차입 상환액은 전연도 결산 수업료의 7%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이때 수업료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누리과정학비지원금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의 총합을 의미함.

#### □ 적립금의 인정

- 사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차입금과 함께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5년 이내 구체적 계획에 의한 적립을 허용함. 적립금의 비율은 전연도 결산 수업료의 7% 이내로 함. 이때 수업료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누리과정학비지원금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의 총합을 의미함. 적립금과 차입금을 동시 운용할 수는 없음.

#### □ 결산서 제출 시기 지연

-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경리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드물어 유치원의 장이 주로 회계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2012년 발표된 기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이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결산서를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가 2월이고 40일이 되는 4월 중순까지 신입생 취원 등 유치원으로서 매우 분주한 시기여서 원장이 실지로 이 시한을 지켜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출 시기를 2개월로 조정함. 또한 최종 확정 시점은 55일에서 3개월로 지연·조정함.
- 이러한 조정은 공립학교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학교운영위원회 제출하고 4개월 이내 결산 확정하도록 한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함(시·도 교육청 유치원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결과임.)

####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할 교육감 자율 결정권 부여

- 수의 계약의 방법을 구체적 규정으로 두지 않고 교육감이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함.
- 관할청의 감사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함

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치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이 대상기관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줌. 특히 기존에 발표된 2012년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과 비교했을 때 3년 주기 감사 원칙을 완화하여 교육감이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에도, 수의 계약 체결 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 할 수 있는 경우를 교육감이 정하여 확대할 수 있게 하였고, 예산편성요령을 지역별로 교육감이 작성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의 통일을 위한 편성방법(과목해소) 제시

- 지역마다 세입세출 예결산 양식이 다르고 유치원 현장은 각 예·결산서의 관·항·목 구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개별적으로 자의적 해석에 의해 작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유치원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고 학부모 및 관련자들이 각 유치원의 재정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차이나는 예결산서 작성은 해석과 비교에 있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괄 정리와 통일된 작성 요령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예·결산서 관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여 유치원 현장의 예결산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징적으로,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금은 보조금(관)이 아니라 '입학금 및 수업료(관)-수업료(항)-누리과정지원금(목)'에 포함시켰고, 정부보조금(항)은 교육정보조금(목)과 지자체보조금(목)의 2개 목으로 구분함.
- 세입 관·항에 차입금을 추가하고 이를 목에서 다시 일시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
- 혼동가능성이 있는 세입예산 상의 '적립금'과 세출예산 상의 '적립금'을 분명히 구분하여, 세입 상 적립금은 '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세출 상 적립금은 실제 연간 적립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목해소를 제시함.

## IV. 적립금 및 차입금 적정 기준 비율 산출

□ 본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적립금과 차입금을 일정 수준으로 허용하고 있음.  
차입금은 일시차입과 장기차입이 가능함.

- 일시차입금은 교육청에서 1분기 유아학비 지원금을 늦게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3월 교사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환 재원이 있을 때 단시일 간 차입을 가능하도록 하여 유치원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제10조(차입금) ① 유치원경영자는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 장기차입금과 다르게 일시차입금의 차입처는 제1금융권의 각 은행과 사학진흥재단뿐 아니라 해당 유치원운영자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차입금의 경우 정해진 세 가지 목적 즉, 유치원의 개·보수, 교재교구의 구입, 통학차량의 구입을 위한 이유로 차입이 가능함. 이 때 장기 차입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상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전 계획이 필요함. 계획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

② 유치원경영자는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의 구입, 통학차량의 구입을 위해 1년 이상 5년 이내의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차입금의 이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치원의 개·보수비용을 차입금 또는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치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는 것과 의미가 맞닿아 있음. 유치원을 설립한 후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설립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봄. 이에 설립자 부담이 아닌 차입금, 또는 수업료 일부의 적립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함.

- 교재교구비의 경우, 연간 세출예산을 통해 그 해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기기나 교재교구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용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단선진화 기기, 대규모 놀이 기구 등 연간 예결산에서 반영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 사용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검토와 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함.
  - 유치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장비이면서 비용 소모가 큰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차입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음.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며, 차량 구입을 위한 차입과 적립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그러나 차량구입보다 임대가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우명숙, 2012).
  - 장기 차입 대상 기관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비롯하여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일반 은행,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은행 등 특수 은행이 모두 포함되며, 제2금융권은 제외됨.
- 적립금과 차입금 상환액 비율은 모두 전년도 결산의 수업료 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대 7%를 한계로 두고 있으나 이는 유아에게 투입되어야 할 교육비를 줄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보다는 낮은 5% 내외로 수립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음(우명숙, 2012).
- 본 규칙 안에서 제시하는 7%라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에 의존하여 그 적절성이 도출되었음.
- 유치원 정보공시에 공개된 유치원 2012년 세출결산서를 취합하여 연간 시설 대규모 개·보수비로 사용된 재산조성비 관의 '시설비' 항목에 보고된 비용과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한데 지출한 것으로 보고된 비용을 구함. 이 비용 합의를 대표치를 2012년 사립유치원의 개·보수비용으로 정함.
  - 개·보수 비용은 결산서에서 '공통운영비' 항목에 포함하여 보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폐기물처리 등 일상적인 시설유지·관리 측면의 수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건물 페인트 도색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수선의 비용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시설비에 함께 포함하여 계산함. 이러한 예외적 경우의 파악을 위하여 494개 모든 사례 각각의 결산서를 검토함.

〈표 IV-1-1〉 사립유치원 표본 분포 및 개·보수비 계상 유치원 수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개·보수비 계상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기관규모	60명 이하	163	33.0	125	76.7
	61-120 이하	195	39.5	169	86.7
	120 이상	136	27.5	115	84.6
지역규모	읍면지역	129	26.1	108	83.7
	중소도시	149	30.2	122	81.9
	대도시	216	43.7	179	82.9
설립년도	2003-2012	131	26.5	115	87.8
	1993-2002	140	28.3	112	80.0
	1983-1992	141	28.5	112	79.4
	-1982	82	16.6	70	85.4
소재지	서울특별시	112	23.0	95	84.8
	부산광역시	42	8.5	35	83.3
	인천광역시	52	10.5	40	76.9
	광주광역시	12	2.4	11	91.7
	대전광역시	7	1.4	7	100.0
	울산광역시	17	3.4	15	88.2
	경기도	66	13.3	54	81.8
	강원도	4	0.8	4	100.0
	충청북도	23	4.6	15	65.2
	충청남도	32	6.5	26	81.3
	전라북도	19	3.8	16	84.2
	전라남도	43	8.7	37	86.0
	경상북도	29	5.9	25	86.2
	경상남도	34	6.9	27	79.4
	제주특별자치도	2	0.4	2	100.0
	계	494	100	409	82.8

주: 개·보수 계상의 비율은 각 구분 내에서의 개·보수여부 비중임.

자료: 2012년 전국유치원 세출결산자료,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est.go.kr>).

- 3,948개(김은설 외, 2012) 사립유치원 중 12.5%인 494개원을 무선표집하여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였음. 표집된 유치원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 494개 표본 유치원 중 2012년에 시설비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409개원 으로, 전체의 82.8%임. 개·보수를 시행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이 항목에 지출된 비용의 대표치(평균)를 살펴보면 33,865천원으로 나타남, 이 때 표

준편차는 39,309천원으로 매우 분포가 흩어짐을 알 수 있음. 즉 유치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그러나 설립 연도별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다음 <표 IV-1-2>은 2012년 세출결산에 나타난 개·보수비용을 보여줌.

<표 IV-1-2> 사립유치원 연간 개·보수 비용

단위: 개원, 천원, 명

	구분	빈도수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원아수
기관규모	60명이하	125	10,800	15,407	15,694	65.87***	43.2
	61-120이하	169	19,200	27,052	27,450		89.5
	120이상	115	45,900	63,940	52,887		178.6
지역유형	읍면지역	108	18,300	28,822	35,414	3.51*	89.9
	중소도시	122	18,800	29,834	31,921		90.4
	대도시	179	22,300	39,655	45,110		105.6
설립년도	2003-2012	115	22,700	38,497	47,336	1.04	111.5
	1993-2002	112	20,500	34,702	39,529		100.8
	1983-1992	112	19,400	31,092	32,305		89.0
	-1982	70	15,900	29,353	34,237		81.1
	계	409	20,000	33,865	39,309		97.0

자료: 2012년 전국유치원 세출결산자료,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est.go.kr>)

\*  $p < 0.05$ , \*\*\*  $p < 0.001$ .

-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2014년 결산에서 개·보수 비용을 보고한 유치원이 83%정도이므로 약 20%에 가까운 유치원은 이 해(年)에 개·보수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이를 5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해 약 20%씩의 유치원이 돌아가며 개·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볼 때 한 유치원 당 5년의 기간 중 한 해를 제외한, 4회 정도의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대략 추측할 수 있음.
- 본 분석에서 수업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과 국가가 누리과정학비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수업료는 2012년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중 누리과정학비를 포함한 부모부담비용 자료를 활용함. 다음의 <표 IV-1-3>는 2013년 표준유치원교육비산출을 위한 자료 조사에서 정리된 부모부담 유치원 교육비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김은설 외, 2013 참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유치원의 입장에서 이 모든 항목은 수업료 수입에 해당함. 유아 1인당 월 331,206원을 수업료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연간 유아 1인당 수업료 수입은 3,974,472원(약 3,974천원)이 됨.

〈표 IV-1-3〉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수업료 수입(학부모 부담+국가지원금)

단위: 원, 기준: 개월

지역	유치원 규모	기본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재료비	차량 운영비	현장 학습비	기타	계
대도시	대	272,362	17,532	45,149	33,577	25,306	18,545	35,235	375,798
	중	259,639	16,930	45,085	29,920	21,382	19,722	35,471	361,186
	소	241,519	12,800	43,381	33,014	21,273	13,666	29,091	334,371
중소도시	대	255,947	13,111	49,493	39,829	24,453	15,858	32,404	374,953
	중	239,897	11,539	43,016	35,102	16,104	18,089	36,036	341,203
	소	229,394	16,222	47,661	34,984	18,803	16,366	26,355	325,081
읍면	대	244,191	11,977	38,257	25,020	20,500	11,312	32,625	322,085
	중	224,306	14,553	32,120	25,471	19,582	12,936	39,442	286,389
	소	214,630	13,760	33,169	22,001	14,126	12,059	31,167	259,792
계		242,432	14,269	41,926	30,991	20,170	15,395	33,092	331,206

주: 위의 '총 비용'은 누리과정 국가지원비용인 22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해인(2013).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 적립금의 경우

- 적립 기간의 한도인 5년을 기준을 볼 때, 5년간 시설 유지를 위한 개·보수(차량구입 포함)로 지출할 비용은 산출된 평균값 33,865천원의 4배(주. 앞서 살펴본 바처럼 5년 중 4회 개·보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가 되므로 총 135,460천원이 됨. 즉, 5년간 해마다 연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액으로 분할해 보면 년 27,092천원 적립이 필요함.
- 연간 유치원 수업료 수입은 평균 유아 일인당 수업료 3,974천원 × 97명(유치원당 평균 유아 수) = 385,478천원이 됨.
- 그러므로, 연간 적립 필요 금액을 연 수업료(5년간 수업료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함) 대비 비율로 보면, 27,092천원/386,478천원 = 0.07 즉 7%가 됨.

- 이러한 결과로, 연 3%(2014. 5. 12. 국민은행 정기적립금 공시 기준) 적립 이자를 연복리로 적용하면 5년간 총 136,496,568원을 적립할 수 있음.

**수업료 대비 연간 적립금 비율 산출 식:**  

$$(연간\ 개\cdot\text{보수비} \times 4\text{회} \div 5\text{년}) \div (연간\ 수업료\ 수입\ 총액)$$

$$= (33,856,000 \times 4 \div 5) \div (331,206 \times 12 \times 97)$$

$$= 27,092,000 \div 385,523,784$$

$$= 0.07 = 7\%$$

○ 차입금의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을 하여 유치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생긴 경우 연 이자율 3.92%(2014. 4. 1.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를 기준으로 하여, 본 분석에서 산출된 평균 비용을 활용하면 대출 필요 금액과 연간최고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음.
- 5년간 필요한 개·보수비용은 135,460천원임. 이를 5년간 매해 같은 금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보면, 연 27,092천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3.92% 이자율이 더해지면 28,154천원이 됨. 즉, 매년 최고 28,154천원을 상환해야 함. (물론 이는 첫 해 기준이며, 해가 지날수록 차입금 원금이 줄어들어 상환액이 적어질 수 있을 것임.)
- 연간 최고 상환액을 연간 수업료 수입(앞서 제시됨)에 비추어 비율을 보면, 28,154천원 ÷ 385,478천원 = 0.073임. 즉, 수업료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적립금과 차입금이 동시에 추진될 수 없고, 적립금의 수준을 7%로 정하고 있고 또 유치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차입금 상환 수준을 적립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차입금 상환율도 적립금 수준과 동일하게 7%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V. 결론 및 논의

- 사립유치원이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끼친 공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대함. 국가가 감히 모두 채우지 못하는 유아기 교육의 많은 부분을 사립유치원이 맡아 인적자원 양성의 역할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원을 사립유치원에 대거 투입하게 되게 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시기를 맞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투명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재무·회계 규칙 도입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당연하며 정당함.
- 한편 (학교법인을 제외한)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임.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음. 첫째는 자본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로, 투자금 이상의 산물 회수를 기대하면서 영리적 목적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둘째는 이윤 추구보다는 투자한 사업이 대중과 공공을 위한 목적에 비추어 공공의 덕을 창출하며 무리없이 꾸준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비영리적 목적임.
- 그러한 관점들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정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임. 개인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목적 중 전자나 후자 어디에도 들 수 있고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음. 즉,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므로 어린이에 대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 공적 기관이기도 하지만, 설립한 투자자가 사회공익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계유지의 목적도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적 재산의 인정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임.
- 어느 쪽이 완전히 옳다고 하기 애매하며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자본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영리 추구 학원과는 다르며,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는 점임. 학교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적

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뜻함. 공적 운영이라 하면 개방성과 투명한 재정 공개를 당연한 의무로 추구하는 운영 방식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공 재무회계를 따라야 하며 투자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기관임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개념임.

-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보편주의에 의해 모든 유아에게 일일 5시간을 포괄하는 월 교육비가 동일하게 지원된 2012년 이후 전체 아동 인구수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음. 이는 공적 자원의 지원이 사립유치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줌. 즉, 국가지원금의 정적 효과에 대해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측면에서는 유치원의 공적 역할 또한 커졌음을 의미함.

〈표 V-1-1〉 연도별 사립유치원 원아 수

단위: 명, 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아수	417,807	417,320	424,488	423,128	418,694	411,825	412,010	438,739	492,534	516,136

자료: 김은설 외(2012). 유아교육연차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한편, 2014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시설 유형을 유지하는 형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지원금이 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을 주지만 공적 개방 요구 부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전혀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며 자율적 체계에 따른 자체 감독만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으로 별도 유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함.

## 참 고 문 헌

- 김병주·김성기·오범호(2010).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해인(2013).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연차보고서.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우명숙 외(201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방안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연합뉴스 보도자료(2014. 8. 29). 유치원·어린이집 결제카드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인구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웹사이트 자료〉

- 전국유치원 세출결산자료.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est.go.kr>).

## 부 록

---

부록 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부록 2. 공청회 토론문

부록 3.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기준 요약



## 부록 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2014. 8월 수정(안) [시행 20 .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3조 및 제5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유치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통칙)**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할청)**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재산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자)** 유치원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유치원경영자”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된다. 다만, 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유치원의 장이 된다.

**제8조(자금의 관리)** ① 유치원의 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유치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유치원회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채무보증 금지)** 유치원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10조(차입금)** ① 유치원경영자는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경영자는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의 구입, 통학차량의 구입을 위해 1년 이

상 5년 이내의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경영자(법인이 설립한 경우 이사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기타 관할 교육청 요청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장기차입금의 매년 상환액은 유치원회계의 전년도 세입결산 수업료 총액의 7%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는 제21조제1항에 의한 적립금 중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다른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다. 단, 수업료는 [별표 1]에 제시된 예·결산과목 중 수업료 항의 금액(수업료 목과 누리과정지원금 목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차입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제1항의 차입처에는 유치원경영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차입 이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금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입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1조(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며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조항의 수의계약 대상, 범위,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도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⑤ 계약서의 작성, 보증금에 관한 사항, 검사조서의 작성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품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13조(물품의 관리)** ① 유치원의 물품관리자는 유치원의 장으로 하며,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유치원의 장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명하며,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 ④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불용품의 처리)** ① 유치원의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유치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5조(유치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유치원 현황표[별지 제1호 서식]
  2. 재산관련 장부와 서류
    - 가. 재산대장과 도면[별지 제2호 서식]
    - 나.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다. 기타 주요한 재산관련 서류
  3. 징수부[별지 제4호 서식]
  4. 징수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
  5. 수입일계표[별지 제6호 서식]
  6. 지출부[별지 제7호 서식]
  7.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
  8.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9. 금융기관과의 거래 입증자료(거래통장원본, 금융기관이 발행한 거래내역 등)
  10. 제20조, 제21조, 제28조, 제29조의 장부 및 서류
  11.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
-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유치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제1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유치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유치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7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편성 요령 등)**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유치원 '예산편

성요령' 등을 정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유치원경영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유치원의 예산 편성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③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유치원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별지 제10호 서식]
2. 세입·세출예산서[별지 제11호 서식]
3. 장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4. 유치원 현황표[별지 제1호 서식]
5. 교직원 인건비 일람표[별지 제13호 서식]
6. 법인의 경우 이사회 관계 회의록 사본

**제21조(예산편성절차)** ① 유치원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을 편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교직원은 유치원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유치원경영자는 예산안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유치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는 유치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예산)** ① 유치원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유치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②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을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① 유치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 수익자부담경비, 목적성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비)** ① 유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제25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호 변경은 할 수 없다

**제2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퇴직적립금, 교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건축적립금, 교재교구구입을 위한 교재교구적립금, 통학차량구입을 위한 차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승인받아야 한다.

1. 적립금 적립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
2. 적립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3. 기타 관할 교육청 요청 서류

② 적립금 적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단, 퇴직적립금 제외), 매년 적립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의 수업료 총액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업료는 세입결산서 항목 중 수업료와 누리과정지원금의 합을 의미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해당 유치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적립기간 및 폐원 시 적립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① 유치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를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경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결산총괄표[별지 제16호 서식]
2. 세입·세출결산서[별지 제17호 서식]
3. 이·전용 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4. 예금 잔액 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
5. 예비비 사용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7. 교직원 인건비 일람표[별지 제13호 서식]

**제30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 유치원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회계

**제31조(회계연도)** ① 유치원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유치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32조(회계의 방법)**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규모와 실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유치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유치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제33조의 수입기관·지출명령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유치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조항 대상 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5조(수입금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유치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36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7조(과년도수입과 반납금)**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 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9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유치원의 장이 행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하여야 하며, 「민법」에 따라 유치원의 채무와 유치원 외의 자의 유치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유치원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40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43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호계약 조건이 있을 시 그를 따를 수 있다.

**제41조(증빙서류)** 유치원의 장 및 지출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4.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서 및 내역서

**제42조(선급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급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3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직책급여무추진비
  2. 수련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장 감사

**제44조(감사)** ① 유치원경영자(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는 유치원의 장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유치원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사인이 운영하는 경우 경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유치원경영자(이사장)가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경영자(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관할청 감사)** ① 관할청은 유치원에 대하여 재무·회계 관련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유치원 재무·회계 관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유치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적용대상)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2015. 3. 1부터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 예·결산 과목

## 세 입

과 목			편성방법(과목해소)
관	항	목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입학금	금년도 입학원아로부터 징수한 입학금 수입 (원복, 가방, 모자, 경비: 「수익자부담경비」 계상)
		수업료	수업료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 중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금
전입금	유치원 경영자 부담금	유치원경영자(개인,법인,재단)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전입(보충)하는 금액 (연금부담금, 재해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 기타부담금, 기타전입금)	
보조금	정부 보조금	교육청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단,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금, 방과후과정교육비 지원금 제외)
		지자체 보조금	교육청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 기관 지원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순계입액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전년도 집행잔액)=세입과 세출의 차액
		이월 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로 예산 현액으로 관리. 즉, 전년도 중 종료하지 못한 목적사업비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중 적립금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금년도 집행예정 금액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수입(적립금 이자수입 포함))
차입금	차입금	일시 차입금	재정운영 불가피한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 한하여 회계에서 충당하는 비용
		장기 차입금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을 위해 1년 이상 5년 이내로 차입(장기차입금의 이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한 금액
수익자 부담 교육비	수익자 부담 교육비	방과후 교육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과정교육비
		방과후 지원금	방과후과정교육비 지원금
		특성화 활동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특성화활동비(사업별로 산출기초 근거하여 제시)
		현장 학습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생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생 급식비, 간식비
		차량 운영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통학버스비
		졸업 앨범비	졸업생 앨범비
		기타	그 외 수익자부담경비(원복, 모자, 가방, 교재·재료비 등)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전년도 징수 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 당해연도 수납하는 금액 지난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서 미수납된 금액은 현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 계상(전년도 미납수업료, 증명수수료 미수입액)
잡수입	예금 이자	예금 이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기타 잡수입	기타 잡수입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매각대, 학교시설 및 학교 물품 사용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변상금, 위약금)

## 세 출

과 목			편성방법(과목해소)
관	항	목	
인건비	급여	교원급여	기본급
		사무직원 급여	기본급
	수당	교원수당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
		사무직원 수당	사무직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
	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퇴직금(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법정 부담금	법정 부담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 재보험부담금 (각 공단 가입된 유치원에 한하며 교·직원 구분 계 상)
임시직 급여	임시직 급여	임시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 강사료(시간강사, 전임강사, 명 예교사)포함 (급여,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 ※사무직원의 산가, 병가, 휴직에 의한 급여는 일용잡금으로 보수 계 상	
교수학습 활동비	교수학습 활동비	교수학습 활동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학사관리/환경정리/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재교구구입비/도서구입비/교육기자재/실험실습비/학부모경비 제외한 현장학습비/각종행사비/학습준비물)
관 리 운영비	공 운 통 영 비	일반 수용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제외)  ● 행정자산: 복사기, 프린트, 사무용집기 구입비 ● 시설관리: 시설소모품비, 경비용역비, 폐기물처리비, 소방안전비 안전점검비, 청소용품비 ● 기본운영: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특근매식비, 여비, 간행물구독비, 물품수선비
		학생 복리비	원아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비, 구급약품구입, 치료비, 급간식비(수익자부담경비 아닌 경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등
	업 무 추 진 비	업 무 추 진 비	유치원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 에 소요되는 제 경비
연 구 장 학 비	연 구 장 학 비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또는 연수비
상 환· 반 환 금	상 환· 반 환 금	상환금	이자 또는 원금 상환(전년도 세입결산 수업료 총액의 5%)
		반환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과오납금 처리
지 난 년 도 지 출	지 난 년 도 지 출	지 난 년 도 지 출	지 난 년 도 확 정 된 채 무 로 지 출 해 야 하 는 사 업 비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등 계상)

재 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건물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개·보수비 (건물수선, 고정시설수선비, 부지조성비 등)
	자산 취득비	토지 및 건물 매입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세입예산서의 전입금 수입이 편성된 유치원만 계상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교육시설의 개·보수, 교재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의 대규모 사업목적 적립금 (적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적립금은 전년도 결산 수업료 총액의 7%를 초과할 수 없음)
수익자 부 담 교육비	수익자 부 담 교육비	방과후 교육비	방과후과정교육비 강사료, 교육활동 재료구입비 등
		특성화 활동비	특성화활동교육을 위한 소요경비(사업별로 산출기초 근거하여 제시)
		현장 학습비	현장학습을 시행하기 위한 소요경비(차량임차료, 간식비, 입장체험료)
		급식비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소요경비
		차량 운영비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졸업 앨범비	앨범제작 소요경비
		기 타	그 외 수익자부담경비(교재비, 원복, 가방 등)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 예비비를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음. 전체 예산의 2%을 초과할 수 없음.

## ※비고

1. 목은 실제에 따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에 책정된 관·항·목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 유치원 현황 표

### 1. 학급 및 원아 현황

구분	인가	학급편성 및 원아 수									비고
		원아 수				학급 수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합계	
학급 수											
원아 수	남										
	여										

### 2. 교원 현황

구분	원장	원감	정규교원			기타			합계	비고
			보직교사	교사	소계	보조교사	시간강사	소계		
정원										
현원										

### 3. 직원 현황

구분	사무직	임시직	계	비고
정원				
현원				

[별지 제2호 서식]

## 재 산 대 장

### 1. 건물

일련 번호	건물명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취득금액 (원)	취득 연월일 취득사유	등기부상의 소유권 및 등기연월일	비고

### 2.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취득금액 (원)	취득 연월일 취득사유	등기부상의 소유권 및 등기연월일	비고

### 3. 공작물 및 입목죽

일련 번호	구분	명칭	수량	취득금액(원)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비고

### 4. 무체재산

일련 번호	명칭	전화번호	수량	취득금액(원)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비고

### 5. 금융재산

일련 번호	명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만기일자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 정 수 부

관 항 목		(단위 : 원)					
연 월 일	적 요	예산액	정 수 결 정 액 ①	수 납 액 ②	불 납 결 손 액 ③	미 수 납 액 ①-②-③	

[별지 제5호 서식]

## 징수결의서

증빙서 번호	회계연도		담당	원장
관		발 의	. . .	
항		징수부등제	. . .	
목		납입고지일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20px;"> <span style="margin-right: 20px;">일금</span> 원정         </div> <p style="margin-top: 10px;">₩</p>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적 요 (산출근거)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 수입일계표

○○년도 ○○월 ○○일

결재		담당	(인)	원장	(인)
과목			적요	금액	비고
관	항	목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 지출부

관           항           목

일자	적    요	거    래    처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지출 번호

[별지 제8호 서식]

## 지출결의서

증빙서 호

담당	원장	회계연도		담당	지출원
계 약 (주 문)	. . .	관		발 의	. . .
지출 원인 행위 등기	. . .	항		지 출	. . .
납 품 (준공,운반)	. . .	목		지 출 부 등 재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금</div> 원 ₩					
채주 주소 성명(상호)					
적 요 (산출근거)					
비 고					

1. 이 서식외의 난은 적절히 증설 사용하여도 가능함
2.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시는 별도의 계약서와 명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9호 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		적 요	거래처	수입액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②	증빙서 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 예산총칙

제1조 ○○○○학년도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세출은 각각 ( )원으로 하며, 세입·세출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2조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제3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세금, 공과금
3. 반환금

제4조 ○○○○학년도 중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 )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 세 입 · 세 출 예 산 서

(가) 세 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 감 ①-②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나) 세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 감 ①-②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별지 제14호 서식]

## 적립금 적립계획서

기관명: 00유치원(법인 00 학원)

2015. . . 현재 (단위 : 원)

연도	적립금액	재 원	적립금 관리	비고
합계				

[별지 제15호 서식]

## 적립금 사용계획서

기관명: 00유치원(법인 00 학원)

2015. . . 현재 (단위 : 원)

적립목적(용도)		비고
재원		
적립총액		
사용내역	사업명	
	계약(예정) 금액	
	계약방법	
	사용잔액	
	사용잔액 처리	



[별지 제17호 서식]

## 세 입 · 세 출 결 산 서

(가) 세 입

(단위 : 원)

과 목			최종예산액 ①	세입액 ②	증감액 ①-②	산출기초
관	항	목				
합 계						

(나) 세 출

(단위 : 원)

과 목			최종예산액 ①	세출액 ②	증감액 ①-②	산출기초
관	항	목				
합 계						



[별지 제19호 서식]

**예 금 잔 액 명 세 서**

(            )유치원장 (직인)

예금종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지정 일자	잔액(원)	비고

[별지 제20호 서식]

### 예비비 사용 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별지 제21호 서식]

**보조금 명세서**

(단위 : 원)

수령일자	보 조 내 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별지 제22호 서식]

###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추가경정 예산액 ①	기 정 예산액 ②	증 감 ①-②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 부록 2. 공청회 토론문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안 토론문

박경호(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재정지원은 2012년 유치원 5세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전체 유치원생에 대해 기본과정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인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어느 수준까지 재정운영 기준을 요구하고 검증할 것인지는 논의거리이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은 발표자가 밝히고 있듯이 재산권보다는 운영권 가운데 재무적인 부분에 국한하고 있어 본 토론은 재무적 부분의 공공성에 대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재무적 투명성과 관련한 이슈로 예·결산 공개, 유치원경영자와 유치원의 장의 관계,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예·결산 공개와 관련해 예·결산 공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 제출, 관할청 보고와 같은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부모 공개는 예산에만 적용되어 결산의 경우에도 학부모 공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규칙의 유치원경영자는 유치원의 장(원장)과는 별도 개념으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으로 법인의 이사장과 대응한다. 그런데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경영자와 유치원의 장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21조 1항 '유치원의 장이 예산안을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동조 4항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그리고 제44조 '유치원의 장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 감사'하도록 한 규

정은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수입과 지출 집행기관 관련 제34조에서 원칙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유치원장이 회계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 규모 유치원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유치원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임의적용이 우려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유치원장이 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재무적 안정성과 관련한 이슈로 적립금과 차입금은 중복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료의 7%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문 <표 3> 사립유치원 연간 개·보수비용이 기관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보수비용을 기관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규모에 따라 연간 개·보수비용을 충당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립유치원 개·보수비용과 수업료 원자료를 분석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발표문의 <표 3>과 <표 4>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수업료 수입(학부모 부담+국가지원금)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기관규모별 연간 개보수 비용 대비 수업료 수입 비율'을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다.2)

<표 1> 기관규모별 연간 개보수 비용 대비 수업료 수입 비율

(단위: 천원, 명)

기관규모	원아당 연간 수업료	평균 원아수	연간 수업료 수입(A)	연간 개보수 비용(B)	비율 (B/A)
60명 이하	4,012	43.2	173,338	15,407	8.89%
61-120명 이하	4,334	89.5	387,914	27,052	6.97%
120명 이상	4,510	178.6	805,410	63,940	7.94%

주: 발표문 <표 3> 사립유치원 연간 개·보수 비용과 <표 4>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수업료 수입(학부모 부담+국가지원금)을 활용하여 산정함

앞선 예상과 유사하게 기관규모가 60명 이하인 경우 연간 개보수 비용 대비 수업료 수입 비율은 8.89%, 61-120명 이하인 경우 6.97%, 120명 이상인 경우

2) 본문에서 언급한 발표문의 <표 3>과 <표 4>는 본 과제 보고서의 <표 IV-1-2>, <표 IV-1-3> 임

7.94%로 분석되었다. 이는 차입금과 적립금의 상한선을 7%로 설정하는 경우 수치적으로만 볼 때 60명 이하, 12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개·보수비용이 부족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와는 별도로 발표자가 제안한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에 의한 갈등을 사립유치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므로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바우처 성격을 띠고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형식으로 유치원에 투입되기 때문에 유치원 입장에서 수업료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재원의 성격만 사적재원에서 공적재원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공청회 주제인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과 같은 공공성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면 유치원경영자는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수업료, 교육프로그램 등이 여타 유치원과 대동소이하다면 학부모는 비용을 감수하며 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상당수 학부모들이 이러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 유치원에 공적 재정지원이 시행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유치원 수업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유치원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은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복지, 저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와도 연계된 사안으로 대안형 자율학비 유치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안 토론편

김기풍(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주무관)

- 적립금 및 차입금 전년도 수업료 7% 적립에 대한 견해
- 2012년 공청회 시 차입금·적립금 허용은 전년도 수업료의 결산의 5% 이 내에서 2014년에는 2% 증가한 7% 제시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다.
  - 산출근거는 평균 유아 일인당 수업료 연 3,974천원 × 97명 = 385,478천원
  - 385,478천원 × 7% = 26,983천원을 5년간 적립 시 134,915천원을 적립 할 수 있다. 이는 중규모 이상의 건물 수선이나, 통학차량 25인승 구매 하여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그러나 소규모 유치원(75명 이하)의 입장에서 보면 5년을 적립하고도 적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1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따른 원비 인상의 부작용도 고려하여 관할청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반하여 과대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유치원(250명 이상)은 7% 적립 시 3,974천원 × 250명 = 993,500천원, 993,500천원 × 7% = 69,545천원으로 5년간 적립 시 347,725천원을 적립 할 수 있고 규모화 되어 있는 유치원 일수록 수업료가 높아 과도한 적립금 적립이 될 수 있어 적립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번 규칙의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건축적립금, 교재교구적립금, 통학차량구입을 위한 차량적립금으로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무분별한 적립금을 적립하기 전 사전 조사를 충실히 하여 적정규모의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추가로 그 동안 사립유치원 적용을 받던 사학기관재무회계 제22조의 2의 규정에는 건축적립금의 경우 증축을 허용 하는데 반해 금회 규칙에는 개·

보수만을 허용 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치원에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건물 증축에 대하여도 적립금에 포함 시킬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차량구입을 적립금을 적립 하려는 경우 차량구입 시 구입비용, 운영 비용, 차량운전자 인건비, 차량수선비등의 고정비용이 발생 하므로 임차를 통한 통학차량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충남의 경우 대부분 공립 유치원은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운영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점을 보면 무리하여 직영을 위한 차량 구입보다는 임차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청 적립금 승인 시 임차운영과 직영운영을 비교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무분별한 통학차량구입 적립금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적립금 비율을 높일 경우 원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립유치원 재원이 학부모부담과, 정부지원 유아학비 및 목적사업비로 유치원경영자(설립자)가 유치원 설립 이후에는 재정투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적립금의 최소화하여 운영 하는 것은 마땅하다.
- 전국단위 수업료 평균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의 수도권과, 전남, 전북등 지방자치단체 간 수업료 격차가 커서 특정 적립비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적립금 및 차입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연도 재원 유아에게 돌아갈 교육재정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과 차입금이 운영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 (제안)적립금에 대하여는 이번 규칙 수업료의 7% 제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액 수업료를 받는 유치원에 대한 규제와 저가의 수업료를 받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적립금 적립 목적 중 차량구입은 가능하면 임차로 전환하고 직영 구입을 최소화가 필요하며 건축 적립금 중 증축이 허용이 안된 것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

#### □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제11조에 대한 견해

- 유치원장이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규칙에 일반경쟁에 대하여 구체적

인 규정이 없어 어떻게 일반경쟁을 실시 할지 알수가 없다. 또한 제2항의 단서 조항의 수의계약 대상, 범위, 절차등을 교육감이 정하게 하여 지침으로 계약에 관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제4절 제35조 ~ 제40조에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을 명기하여 관련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특성상 대부분이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이하, 기타공사 8천이하, 물품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준용 법률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수의계약 절차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안 토론편

김성섭(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재무회계규칙 TF팀)

먼저 토론에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공청회’를 통해 재무·회계규칙 개별항목에 대한 협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3조 및 제5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전에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하면서 협의한 ‘사립유치원 회계의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늘 명분으로 내세우는 법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 초라하고 궁색한 제1조의 목적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순리대로 한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후 열어야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공감하는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토론

사립유치원의 법적인 형태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그 관점들 또한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私人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발제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유형을 1)영리적 목적의 사업과 공익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2)비영리적 목적 및 3)양자의 혼합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성격을 나타내던 간에 회계 규칙은 다양한 성격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이 되어야 한다.

## 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성격에 대한 규명

### 1)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

발제자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들어 재무회계규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공성은 재무회계규칙의 주요한 기본이므로 사립유치원 회계도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의 공공성은 유치원 회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등 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경영체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이 공공성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는 해도 국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정하기에 앞서 공공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제자는 사립유치원 회계 규칙의 공공성의 근거로 누리과정 등의 실행에 의한 유아교육 재정 지원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협의의 교육재정과 광의의 교육재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의 교육재정은 정부의 교육예산을 재원으로 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재정수입을 기초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협의의 교육재정은 교육에 소요되는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성은 당연히 높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광의의 교육재정은 사회 전체의 공교육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경영체의 목적에 공적인 성격이 포함되면 정부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공공재정 부문과 동일하다고 넓게 해석을 한다.

그러나 재정이 전적으로 투입되는 경우와 재정 투입은 없지만 공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의 공공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유치원이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재원이 국가에 있으므로 투입한 재정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이나 감사를 통해 엄격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지만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현실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사립유치원에 국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목적인 목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발제자의 언급처럼,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도출할 수 없으며, 투명성과 공공성은 상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오창걸, 2012).

발제자는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국가가 부모들에게 지급한 국가의 공적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유입되기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로 언급하고 있으나, 넓게 본다면 누리과정은 유아공교육과정의 부분 교육과정으로 국가는 0세부터 양육 수당과 학비 지원 등으로 바우처를 통해 모든 부모들에게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선택권은 유아교육의 수요자이면서 재정의 수혜자인 부모들에게 있다. 재정의 투명성을 대상으로 본다면 국가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부모들을 감독 및 통제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근거로 부모들에게 지급한 학비 사용의 투명성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통해 감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 편의만을 위한 방편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 2) 유치원 회계와 유아교육예산의 효율성

재정과 회계는 공공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에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110년 역사의 지나간 과정을 본다면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즉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는 1976년 공립유치원을 처음 설립하고, 1997년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원은 공교육의 깃발아래 공립유치원의 확충과 시설비 지원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의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며, 심지어는 2012년 이후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누리과정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무상교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힌 정책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보다는 개별 유치원에 공문으로 통보만 하는 방법으로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금을 모두 동결하였고, 일부 지역에 지원되던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나 시설개보수비 및 원비동결에 따른 지원비 등도 감액 내지는 폐지되었다.

발제자는 교육청이 지급을 늦게 하여 발생하는 단기 차입금이 3월의 학기초

에나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에 걸쳐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등 원아들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비조차도 적기에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결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집중적으로 공립 단설을 확충하여 공립의 숫자를 늘이면서 동시에 사립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일부 공립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 예산인지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을 위한 예산인지 그 성격이 모호하게 변질되고 있다. 국가의 유아교육예산이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배부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하여서는 누구도 재론 할 수 없는 명제이기에 모든 영유아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정책 당국의 답을 기대한다.

2012년에 국가기관인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의 표준교육비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교육청에 보고한 700여 유치원의 예·결산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의 결과와 제언에 따르면 표준교육비 대비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수준은 절반에 불과하다. 즉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은 국가가 정한 표준교육비에도 못미치는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교육비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마다 동결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사와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만 지급하기에 교사들만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직이나 기사 등 기타 인력의 인건비가 원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운영비 등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예·결산 항목에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실제 원아당 교육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수준은 유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교육비보다 훨씬 높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얼마만큼의 교육비가 투입되는지, 그리고 그 교육비와 표준교육비의 수준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직접 조사하기를 바라면서 논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또 독자들의 의문 해소를 위해 국가는 연도별 지원되고 있는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예산 비율이나 표준교육비 대비 지원 원비 수준 등 이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 규모나 지원 비율 등의 자료들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공사립이 동등한 투명성과 공공성 및 효율성을 요구한다면, 투명성 논리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효율성에 의한 유아교육 예산 배분으로 재고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는 유아교육법의 기치아래 지원된 국민의 세금이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유아교육비 지원 액수나 지원 기회 등이 표준교육비에 동등한 수준까지 접근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하며, 또한 유아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정하고 세금 투입을 통한 무리한 신규 단설 확장 보다는 필요하다면 부근의 사립 유치원을 공개 매수하여 국민 세금의 남용을 막고 남은 예산은 원아들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을 차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면서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를 전제로 한 투명성과 공공성 및 효율성의 논의로 화두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의 표준교육비가 같아지는 시기에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 3)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인식

설립자, 즉 유치원 경영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회계를 통한 투명성의 인식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발제자는 1)유치원 설립자의 재산으로서 유치원 시설물의 인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임을 이유로, 2)설립자에 대한 급여의 인정은 재무회계규칙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문제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고에 의한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거나 제외한 문제점들은 오히려 회계 항목의 관·항·목으로 편성되어 자금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내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발제자가 가장 현실적인 회계 규칙을 개발하고자 하였다면 재무회계규칙과 법적인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회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 드러내서 그 과정들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재무회계규칙이 될 것이다.

또 논의에서 제외한 내용들은 '설립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적인 상태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연구가 기존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나

타내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틀에서 차입금 등 부분적인 내용만 수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논의를 위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유치원 설립자의 재산으로서 유치원 시설물의 인정'을 논의하려면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가 제시한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재산의 관리자)에는 관리 책임은 설립자에게, 운영 책임은 유치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관리의 대상은 재산, 자금, 채무보증, 차입금, 계약, 물품, 불용품, 장부와 증빙서류 및 장부 보조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7~8조를 통틀어 해석하면 이것은 설립자가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유치원 운영의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설립자가 관리하는 유치원의 재산과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등기부에 설립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부지와 원사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자 이외의 재산은 투입될 여지가 없다. 또 국가가 개인의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시설비 지원도 없으며, 오히려 재무회계규칙에는 모든 관리는 유치원 경영자인 설립자가 담당해야한다고 정의하여 업무의 범위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이든 실제든 유치원과 유치원의 시설물은 설립자의 재산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유아교육법과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설립자의 책임에 대해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한 사실을 정작 논의에서는 적용이 모호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제외된 것으로, 발제자가 논의에서 제외를 하였다면 어떤 문제로, 왜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혔어야 하였지만 단지 법적인 문제로만 간과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둘째로, 설립자에 대한 급여의 인정은 재무회계규칙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문제로 정의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나, 제7조(재산의 관리자)에 의해 관리 책임은 유치원 경영자인 설립자에게 있으며, 제8조에서는 관리의 범위로 재산, 자금, 채무보증, 차입금, 계약, 물품, 불용품, 장부와 증빙서류 및 장부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자체에서 유치원 경영자인 설립자의 업무를 아주 명확하게 확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업무에 대한 합당한 급여나 대가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일반 학교급의 경우로 본다면 교장이나 행정실장 이상의 업무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단지 재산을 투입한 설립자이기에 운영 성과나 투입 자산에 의해 필요한 기회비용은 물론 업무에 대한 보수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근거도 없이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재무회계규칙(안)에서 설립자는 국가나 타인의 지원 없이 오직 개인의 재산을 들여 유치원을 설립하였지만 그 유치원은 개인재산으로 여길 수 없으며,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급여 등 대가는 받을 수 없고, 오직 재산, 자금, 채무 보증, 차입금, 계약, 물품, 불용품, 장부와 증빙서류 및 장부 보조 등 관리 대한 감사나 책임 추궁의 대상으로만 귀결될 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기존의 재무회계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유치원 설립에 대한 재원의 조달과, 투입한 재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기회비용의 인정, 경영관리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급여, 투입 자산의 감가상각, 미래 시점에 대비하는 적립 등은 원칙적으로 회계적인 숫자에 의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단지 '규칙'에 의해 금지시켜야 할 요인들이 아닌 과감히 드러내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논의를 제외한 것은 회계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기초부터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는 유치원경영자, 즉 설립자에 대한 책임만큼이나 이에 상응하는 처우의 내용이 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사립유치원 회계의 쟁점에 대한 논의

### 1) 적립금

발제자가 제안한 재무회계 규칙에는 적립과 차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적립은 미래 시점의 투자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두는 것으로, 목적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의 회계에서는 적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원인으로는 재정회계의 성격상 목적성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 신청하면 되기에 적립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재원이 사인이므로 사인이 일시에 시설개보수 등의 원인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립금은 진작부터 인정이 되었어야 했다.

발제자가 제안한 적립금의 성격은 미래 시점의 투자도 있지만 시설유지비의 성격이 더 강할 것으로 고려된다. 발제자는 적립과 감가상각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차량 등 1회기년도에 충당할 수 없는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최장 5년의 적립과 감가상각만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과 적립을 5년 연한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적인 비품이나 소모품 등의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그러나 유치원이 설립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재건축 등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은 상당해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본다면 유치원 건물도 이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미래 시점에 대비한 원사의 재건축 등 장기성 적립금은 20년을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 2) 감가상각비와 사유재산의 公的 이용료

발제자가 제안한 재무회계규칙에는 적립을 감가상각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유치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발제자가 제안한 감가상각비의 내용을 추정해볼 필요가 있는데, 발제자는 차입금이나 적립금과 같이 감가상각도 시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 연한도 5년을 기준으로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은 적립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은 의미 그대로 원사 등이 건축된 순간부터 부식이나 사용 등으로 소멸된 가치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충당하는 것이며, 적립을 통하여 수선이나 소멸된 가치를 회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균등하게 소멸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충당금의 형식으로 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가상각비를 사립유치원 회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절차를 거쳐 20년을 기한으로 균등하게 비용을 상각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시설이용료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유치원사는 개인의 자산이지만 공익에 의해 교육으로 쓰이면서 가치가 소멸한다고 보고, 감정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 형식의 비용항목을 개설하여 감정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상각하던가,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

법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자가 적립과 감가상각을 동일한 범주로 인정하였다면 토론자가 논한 적립과 감가상각도 동일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주요 항목에 대한 논의와 토론

### 1) 일시 및 장기 차입금의 인정

- ①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은 담보제공 금지로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 명의의 직접 차입은 불가능함. 차입처를 사학진흥재단과 제1금융권으로 한정된 규칙안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제1금융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별도로 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대출을 규정해야 할 것임.
- ② 따라서 실제로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설립자나 원장 명의의 개인 차입을 하고 다시 유치원에서 재차입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③ 또, 제1금융권에서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경영자나 원장의 개인 신용도로 공적 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의 낮은 이율로 차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재차입시 역마진 발생) 차입 이율은 각 유치원별 원비 이체를 지정한 은행의 이자율이 가장 합당할 것임.
- ④ 교육청의 무상교육비 지원 지연으로 차입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해당월의 7일 이전에 이 사항을 사전에 유치원에 통보하여 개별 유치원들이 운영비 등을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⑤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제1금융기관 또는 사학진흥재단을 사전에 차입처로 지정하여 협조를 구한 후 지연일자만큼 해당원에서 우선 차입을 하고, 이체일에 필요한 이자와 원금을 교육청에서 차입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⑥ 지정된 기관 외에 타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매분기 1일부터 무상교육비 이체일)에 해당하는 차입비용을 지급함.
- ⑦ 국가의 무상교육비 지원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운영비의 단기차입은 이율, 기간, 조건 등에 대한 제약이나 허가 등을 모두 철폐하여야

할 것임.

- ⑧ 교육시설 수선 유지를 위한 개·보수비용이나 차량 구입 등 사업이 1 회계연도에 종결되지 못하여 시급한 장기 차입이 필요할 경우 교육 목적이 분명하다면 최대 5년 상환의 장기 차입금 도입을 허용함. (통학차량 구입이나 유치원 교실의 개·보수 등 차입의 목적과 내용이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으로 분명할 경우 굳이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또 시급한 상황의 경우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사립유치원의 차입에 대해 굳이 허가할 담당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며, 따라서 명목과 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신청만으로 하여야 할 것임)

## 2) 재산의 관리자 (제7조)

유치원 경영자와 유치원장의 업무와 책임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함. 즉 관리와 운용의 차이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책임의 한계도 일정하지 않음. 이 내용은 계약으로도 이어짐.

## 3) 계약 (제11조)

-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의해 유치원의 경영자가 되어야 함.  
 ② 입찰 기준은 내정가 기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4) 예산 편성 절차

-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는 유치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유치원 경영자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즉 유치원경영자는 예산에 대한 수정권을 인정받지 못함)

## 5) 적립금의 인정

사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차입금과 함께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5년 이내 구체적 계획에 의한 적립을 허용함. 그러나 차입금의 금액과 성격에 따라 재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즉 단기차입이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적립을 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는 적립과 차입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함. 적립금은 대상에 따라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원사 건물 등 고정자산은 20년을, 차량 등 유동자산은 5년을 적용함이 필요.

## 6) 기타운영비의 신설

- ① 회계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기타운영비> 항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② 기타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감가상각비 개념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의 개념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5년과는 다른 개념이며, 기간은 20년 기준), 유치원 원사 이용료, 유치원 경영자의 경영활동비 등으로 볼 수 있음.
- ③ 비율은 예산액 기준 15%를 월별로 나눈 것으로 함.

<사립유치원 요구 근거 15%에 대한 산정 근거>

- 1) 기존에 제시된 적립과 5년 장기 차입으로 7% 포함.
- 2) 유치원 원사의 공적이용료와 경영활동비로 8%를 책정  
 근거 : 유치원 원사의 공적이용료는 사학진흥재단의 이자율 4%로 보는 것이 합당  
 유치원경영자의 경영활동비, 경영 컨설팅비등 4%  
 합계 8%
- 3) 전제조건으로 적립과 장기차입이 진행될 경우는 8%, 없을 경우는 15%
- 4) 공공 감정 기관의 감정 절차

## 2.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 및 이용료에 대한 고찰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 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여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이해하면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율권이 거의 완벽하게 인정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육아정책연구소나 교육부의 시각과 유치원 현장의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 이 분명하며 오히려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육아정책연

구소나 교육부는 공교육이라는 잣대로 사립유치원을 재단해왔다.

이 시각의 차이로 인해 설립자의 보수지급, '개인의 재산'인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이용료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교육의 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기 위해 전국에 4천 여 유치원을 설립했다고 볼 수 없다.

사립유치원 설립이 교육적 목적과 재산적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개인의 재산'이 추상적 개념에서 현실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학비 바우처의 성격을 띠고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형식으로 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적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정부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해놓고 이면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투명성, 책무성을 강요하고 있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러한 명분아래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개인의 재산'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묵시적으로 요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표 1〉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보건복지부)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65세 이상 노인수	수급자 수	수급률
2008년	5,069,273	2,897,649	57.2
2009년	5,267,708	3,630,147	68.9
2010년	5,506,352	3,727,940	67.7
2011년	5,700,972	3,818,186	67.0
2012년	5,980,060	3,933,095	65.8

※ 수급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됨.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에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이 지급되었다.

연도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3,933,095명이 수급했다.

이 분들은 부부수급자의 경우 매월 154,900원을 받아 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원을 생필품 판매처에 투입했으니 생필품 판매처 주인도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인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의료 수가(환자가 내는 돈과 국민 건강 보험이 지급하는 돈)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있다. 가톨릭 중앙 의료원의 경우 직원 임금 동결은 물론 간호사 등의 채용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한 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3분 진료'도 어느 대학병원에서나 쉽게 벌어진다. 중소 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동네의원의 경우 하루에 약 4곳이 폐원을 하는 실정이다.'<sup>3)</sup>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 병의원의 원장에게 보수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그동안 학부모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주지 말고 바로 학부모에게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학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적합한 유치원에 보내도록 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부모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가 지원받은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라면 오히려 학부모에게 투명성, 책무성의 잣대를 대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의 공적 재정이 학부모에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투입된다는 논리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3) 자료: 낮은 의료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 국민대학교 최은비|작성자치오리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표 2〉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표 3〉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7.8.]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표 2>, <표 3>, <표 4>에서도 나타나듯이 분명 학교시설, 행정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에 대해 '경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개인의 재산'으로 설립된 유치원에 대해 교육적 공공성을 따져 책무성, 투명성을 요구할 때는 사유재산의 공적이용에 대한 비용을 '경비' 또는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으로 설립자의 보수지급, '개인의 재산'인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이용료 지급이 논란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법과 사례를 통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자체를 제외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연구위원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부는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를 재무회계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 4천 여 사립유치원의 염원을 담아내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논의나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안 토론문

홍경란(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연구이사)

정부는 2013년 12월 유보통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통 평가항목, 정보공시, 재무·회계규칙 적용확대 및 공통적용항목개발 등 유보통합 추진과제 기준에 따른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 선진화계획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전제로 2012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이미 개최하였다.

이에 본 연합회는 재무·회계규칙 제정이 사립유치원 존립에 관한 문제이므로 재무·회계규칙 도입에 앞서 전제 되어야 할 상속증여비과세, 설립자생계특례 법안을 제기하였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유지, 발전, 폐원 등은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은 국가출연비영리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으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시점에서 개인재산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토론자는 발표에 앞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 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준거하여 관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개인설립이라는 설립주체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에 따른 증여세 문제, 개인재산의 권리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먼저 해결되고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가. 상속·증여세 문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유치원은 상속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법인과 달리 '사립학교 설립자'라는 지위만 부여받았을 뿐 재산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과로 인해 유치원 재산일부를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여도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해 유치원 재산은 담보·대출도 되지 않아 사립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사회의 건전한 교육기관육성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일정사유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하여도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나. 설립자 생계보상 문제

연구자가 제시한 재무·회계규칙(안)은 회계에 운용부분만 강조할 뿐 유치원 설립 시에 투입된 재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이 생계형으로 출현한 재산에 대하여 보상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재무회계의 항목별 논의

## 가. 차입금

사립유치원은 원아변동에 따라 회계운영이 유동적이며 유아학비지원의 지연으로 유치원 운영상 차입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는 규정은 의미가 없고(금융 거래 절차상),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차입금 목적으로 교육시설 개보수 비용과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 구입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일정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원장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나. 적립금

적립금 인정에 대한 논란이 많음을 연구자도 언급하였지만 설립초기비용, 건물감가상각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아 유감이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이 재정 안에 명시된 적립금은 노후건물 개·보수, 교재·교구구입, 차량구입 등 한정된 항목과 기간, 한도 등의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식되거나 망가지지 않고 건물 초기와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점 등을 장기, 중기, 단기로 세분화 시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원 건축물은 길게는 30~50년 동안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건물시설과 설비는 주기적으로 개·보수 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한다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여 유사기관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도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반 경비를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15%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재건축에 대한 재원마련 및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결산총액의 15%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다. 결산상 잉여금 문제

재정회계에서 잉여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회계수치에 의한 잉여와 재정적 적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잉여금은 이월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원아변동에 따라 회계운영이 적자일 경우 차입은 불가피하고 적자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초·중·고와는 달리 설립자의 생계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어떠한 식으로든 설립자의 재산출현 부분과 생계보장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설립자 생계보장을 공식화하여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회계에서 생계보상 규정항목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 라. 계약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인력, 구매의 양, 물가상승을 고려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유·보 통합에 있어 필요한 과제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시행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립유치원 사인재산의 공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공공재무·회계를 따르고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기관으로만 해석되어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사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설립자의 사인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곧 사인재산의 공익적 사용부분(무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토론자는 정부에서 규제완화특례법에 따른 가업승계로 좋은 유치원 육성 장려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개인이 출연한 사립유치원 재산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법률안과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생계보장, 해산 시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한 후, 사립유치원 제정운영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서 어린이집처럼 기타운영비항목을 포함시켜 설립자 개인재산 투자 및 건물 감가상각비 등 생계유지 비용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새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부록 3.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기준 요약4)

## 1. 총 칙

### 가. 회계연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나.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 일 까지 완결해야 함

## 2. 예 산

###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지침을 어린이집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 당해연도 예산편성	어린이집 원장	시·군·구 예산편성지침 참고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 지원 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 시설)	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		
○ 이사회의 예산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4)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어린이집 원장	회계년도 개시 5일전
○ 어린이집원장은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 후

## 나.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 경비

## 다.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라. 예비비

-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마. 예산의 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바.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3. 결산

○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		
○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익년도 3.31까지
↓		
○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 4. 회 계

### 가.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 나. 수 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 다. 지 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5.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있게 사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 부록 4. 어린이집 세입·세출 구조<sup>5)</sup>

### 1. 세입 항목

관	항	목
필요경비수입	필요경비수입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보육료 수입	보육료수입	보육료수입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수입	자본보조금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차입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 가. 전입금

- 적용범위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 인건비 등)일 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 일반사항
  - 전입금은 대상, 내역, 금액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설운영을 위해 쓰여야 함
  - 전입금은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입금과 그 성격이 다름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법인회계 전출금과 연계하여 지출 가능

5)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보육사업안내.

## 나. 차입금

- 적용범위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 일반사항
  - －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 예를 들어 차입금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 －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가능
    -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 2. 세출 항목

관	항	목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일용잡급
		계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사업비	사업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 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지출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가. 기타 운영비

- 적용범위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 할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예 : 15%)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sup>6)</sup>

6) 보육료 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보육료수입+기본 보육료)  
 기본 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적립 가능
- 매년 결산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이월 편성
- 계약한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적립금 총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수립한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계획 추진
  - 시설 개보수 등 지출 대상사업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시점에서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적립한다 해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함.

#### ※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 내용 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각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회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산정하여 소유자산이 완전폐기처분 될 당시에 시설에 주는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말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기타운영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시설명의 통장으로 적립운영 가능하며, 그 해 연말 결산처리 후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이월하여 관리하거나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보고 2014-05

---

---

통합 재무회계규칙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연구**

---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금풍문화사 02) 2264-2306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11-0 93330